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8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서울시는 「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」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, 본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의 정의에 어린이집을 명확히 명시하여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“환경교육” 및 “학교 등”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의2)

을 신설하고, “학교환경교육의 지원”을 “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”으로 수정하고, 조례 전반에 “학교”를 “학교 등”으로 수정하였습니다. 그밖에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 및 별지서식에서 이에 관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